

제28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

# 정관 변경 보고

---

2019.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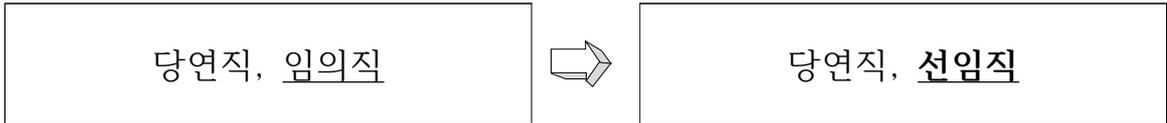
#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 1. 변경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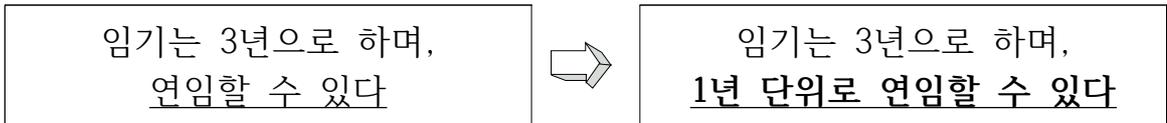
- 도로명주소로 소재지 변경, 임원을 구분하는 용어의 적정성을 제고
- 서울시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에 따라 임원의 임기(연임)를 정비하여 임원 인사의 통일성과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소재지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 (안 제3조)
- 임원을 구분하는 용어 정비 (안 제14조, 안 제17조)



- 임원의 임기(연임) 등 정비 (안 제15조, 안 제17조)
  - ‘당연직’과 ‘근로자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연임) 변경



## 3. 부 칙

- 시행일 :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다른 규정의 개정 : 임원을 구분하는 용어 정비에 따른 정관의 변경 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정관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소재지)</b>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에 둔다.</p> <p><b>제14조(이사의 선임)</b> ①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b>임의직</b>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p> <p>1. ~ 3. (생략)</p> <p>② <b>임의직</b> 이사는 원장이 학계,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p> <p>③ (생략)</p> <p>④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2항의 <b>임의직</b> 이사로 추천한다.</p> <p>1. ~ 4. (생략)</p> <p><b>제15조(임원의 임기)</b> ① <b>임의직</b>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연임할 수 있다.</u></p> <p>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연임할 수 있다.</u></p> <p>③ ~ ⑤ (생략)</p> <p><b>제17조(감사)</b> ①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1인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p> <p>② 감사는 연구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수시로 회계장부등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b>제3조(소재지)</b>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에 둔다.</p> <p><b>제14조(이사의 선임)</b> ①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b>선임직</b>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b>선임직</b> 이사는 원장이 학계,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2항의 <b>선임직</b> 이사로 추천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b>제15조(이사의 임기)</b> ① <b>선임직</b>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u></p> <p>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b>제17조(감사 선임 등)</b> ① 감사는 <b>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감사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b></p> <p>② <b>선임직</b>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p> <p>③ 감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b>당연직</b> 감사의 임기는 <u>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u></p> <p>2. <b>선임직</b>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u></p> <p>④ 감사는 연구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수시로 회계장부등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안)

서울연구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 제1장 총 칙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에 둔다. (개정 1994.12.19, 1997.1.29, 2003.2.7, 2019.3)

##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4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1996.1.25, 2019.3)

1.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및 행정국장(개정 1998.8.31, 2003. 2.7, 2011.2.11, 2016.7.1)
2. 원장 (개정 1999.1.6)
3.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신설 1999.8.28)

②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학계,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0.12.11, 2019.3)

③ 근로자이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16.10.17)

④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2항의 선임직 이사로 추천한다. (신설 2018.4.20, 2019.3)

1. 학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에서 5년 이상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2. 산업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종사했던 사람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종사했던 사람
4. 사회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이사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2019.3)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0.12.11, 2019.3)

③ (삭제 1999.1.6)

④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6.1.25, 2000.12.11)

⑤ 근로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근로자 투표 등 선출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신설 2016.10.17)

제17조(감사)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감사는 서울 특별시 감사위원회 위  
원장으로 한다.(개정 1998.8.31, 2000.12.11, 2015.10.6, 2019.3)

② 선임직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6.1.25, 2019.3)

③ 감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

1.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수시로 회계장부등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19.3)